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14.7.21.] [법률 제 12616 호, 2014.5.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재 담배에 대하여 포장지 및 광고에 경고문구 등의 표시방법·내용이 쉐련담배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내·외형적 특성이 상이한 전자담배, 머금은 담배(스누스), 물담배 등의 경우 그 종류별로 적절한 문구 등이 표시되지 못하고 있고, 신종 담배의 경우 기존 담배에 비해 건강에 덜 해롭다는 식의 허위·과장 광고가 나타나고 있으나, 담배의 경우 검증되지 않은 허위 사실 광고에 대한 제재처분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또한 담배 중 현재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인 쉐련 및 전자담배 외에 파이프담배, 엽쉐련, 각련,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의 경우 이미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 부과·징수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신종 담배인 머금은 담배(스누스), 물담배의 경우도 건강상의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는바,

신종 담배에 대해서도 종류별 특성에 맞게 경고문구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담배의 위해성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한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담배 종류 간 부담금 부과율의 형평성을 도모하며, 흡연율을 감소시켜 담배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으로써 금연 사업 및 관련 질환 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경고문구 등의 내용과 그 표기 방법·형태 등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도록 함(제 9 조의 2 제 3 항 신설).

나. 담배 광고에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표시하지 않도록 함(제 9 조의 4 제 3 항제 4 호 신설).

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에 파이프담배, 엽권련, 각련,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물담배, 머금은 담배를 추가함(제 23 조).

<법제처 제공>

>>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 년 5 월 20 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법률 제 12616 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9 조의 2 에 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에 제조자등이 표기하여야 할 경고문구 등의 내용과 그 표기 방법·형태 등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제 9 조의 4 제 3 항에 제 4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23 조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담배 중 쫄런 및 전자담배"를 "담배"로, "이하 같다"를 "이하 이 조 및 제 23 조의 2 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 3 호부터 제 9 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 2 항 중 "쫄런 및 전자담배"를 "담배"로 하고, 같은 조에 제 7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파이프담배: 1 그램당 12.7 원
4. 엽쫄런(葉卷煙): 1 그램당 36.1 원
5. 각런(刻煙): 1 그램당 12.7 원
6. 씹는 담배: 1 그램당 14.5 원
7. 냄새 맡는 담배: 1 그램당 9 원
8. 물담배: 1 그램당 442 원
9. 머금은 담배: 1 그램당 225 원

⑦ 제 1 항에 따른 담배의 구분에 관하여는 담배의 성질과 모양, 제조과정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9 조의 2 제 3 항 및 제 9 조의 4 제 3 항제 4 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고문구 및 광고에 관한 적용례) 제 9 조의 2 제 3 항 및 제 9 조의 4 제 3 항제 4 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광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 3 조(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 23 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